

# **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연구과정 운영 지침 개정(안)**

2008.06.10.제정  
2008.11.14.개정  
2011.01.27.개정  
2012.02.09.개정  
2017.11.01.개정  
2019.10.25.개정  
2021.08.18. 개정  
2024.02.08. 개정  
2025.12.01. 개정

**제1조(목적)** 한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한의전”이라 한다) 학생들의 한의무석사 학위에 부응하는 연구역량의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)** 한의무석사과정 학생은 개인의 학위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운영 지침에 따른 연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운영위원회)** ① 삭제

② 삭제

③ 원활한 한의학연구과정 수행을 위해 한의학교육실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에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

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한의학연구과정의 평가
2. 지도교수 선임 및 변경
3. 연구주제 승인 및 변경
4. 삭제
5. 제출 논문의 승인
6. 한의학연구과정의 제반 관리

**제4조(지도교수)** ① 학생은 제1학년 제2학기 말까지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1회에 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대학 및 연구소 소속의 전임교원을 한의전 전임교원과 함께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.

③ 당해 (3월 1일 또는 9월 1일) 기준 재직잔여 기간이 3년 이하인 전임교원에게는 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
④ 지도교수가 장기파견, 연구년, 휴직 등 신청 시 학생지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
**제5조(연구논문제안서)** ① 한의전 전임교원은 1학년 2학기까지 연구 주제를 학생에게 공지한다.

② 제시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연구 주제를

변경할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과정 지원)** 학생은 한의학연구과정 수행에 필요한 공간, 기기 및 기술적 학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**제7조(연구논문)** ① 한의학연구과정 학생은 수료 당해 학년도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한국연구재단 미등재지, 해외 SCI(E) 미등재지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, SCOPUS 등재지 또는 SCI(E)급 이상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별쇄본 또는 논문게재 확인서(예정서)를 한의학교육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생 저자의 소속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명기되어 있고, 입학일 이후 투고한 논문이어야 한다.

③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.

1. 논문의 제1저자는 한의무석사과정 학생이며, 교신저자의 연구과정 학생이어야 한다.

2. 졸업요건 논문을 제출한 본인은 논문의 제1,2 또는 3저자이며, 교신저자의 연구과정 학생이어야 한다.

④ 제1저자가 공동 2인일 경우 공동1저자 2인과 제2저자까지만 졸업요건으로 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구보고서)** 연구보고서로 졸업요건을 대체할 경우, 수료 당해 학년도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본인의 연구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위원회에서 지정한 논문 형식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 교육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준용규정)**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2. 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 11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10. 25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연구보고서 제출 경과조치)** 제7조 6항 연구보고서 제출 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21. 08. 1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 02. 0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보고서 제출 경과조치) 제7조 1항 “논문 형태의 연구 보고서” 제출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25. 12. 0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8조 연구보고서의 제출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